

$0 \ 1 \ [\quad]$

가

```

:   ○○○ (   )
      :   1 2 3 - 8 1 - 1 2 3 4 5
:

```

가 : 50,000
가 : 10,000 (: 1990. 7. 5)
가 : 20,000 (: 2020. 2. 15)
가
가 : 1,000,000,000
가 : 500,000,000
: 8,000,000

가

■

가
* 2020 1 1 「 」 . (, 가
) .

: | . P D F ()

PDF가

관리번호	-
------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양도소득세합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⑮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⑯ 납부할세액 (⑩-⑪-⑫-⑬+⑭-⑮)						
⑰ 분납(물납)할세액						
⑱ 납부세액						
⑲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⑳ 소득세	감면세액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㉑ 세율			
㉒ 산출세액			
㉓ 수정신고가산세 등			
㉔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납부할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㉖ 분납할세액			
㉗ 납부세액	㉘ 금융기관명		
㉙ 환급세액	㉚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여,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식의 경우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8. 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⑭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1. ⑮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⑯ 납부할 세액란부터 ⑲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㉙·㉚)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마. 미등기 양도	1-30	70%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0%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0%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0%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18.3.31. 양도분)	1-71	16~52%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 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3	40%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1-21	50%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1	16~52%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1-53	40%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 택('18.4.1. 이후 양도분)	1-52	16~52%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 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4	40%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5	26~62%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1-57	40%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 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6	26~62%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 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8	4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0%
	나.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1-62	10%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1-61	20%
	라.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63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1-10	6~42%
	나. 주식 외의 것	1-10	6~42%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0%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5%(~'18.3.31. 이전)
		1-81	10%(~'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 외전출세)	1-94	20~25%
국 외 자 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 리)	2-10	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2-10	6~42%
	나. 주식 외의 것	2-10	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 내 / 국 외 구 분							
④ 주 식 등 종 류 코 드							
⑤ 양 도 유 형							
⑥ 취 득 유 형							
⑦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⑧ 양 도 일 자							
⑨ 주 당 양 도 가 액							
⑩ 양 도 가 액 (⑦ × ⑨)							
⑪ 취 득 일 자							
⑫ 주 당 취 득 가 액							
⑬ 취 득 가 액 (⑦ × ⑫)							
⑭ 필 요 경 비							
양도소득금액 (⑩ - ⑬ - ⑭)	전 체 양도소득금액						
	비 과 세 양도소득금액						
	⑮ 과 세 대 상 양도소득금액						
⑯ 감 면 소 득 금 액							
⑰ 감면종류	감 면 율						
⑱ 과 세 이 연 신 청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① 주식등 등록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등록코드란: 「지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등록코드를 적으며, 등록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2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상장주식등 주권 등 상장법인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권)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권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의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중소 기업의 법인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스닥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스닥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⑧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질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⑨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질거래가액(⑦×⑧)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⑩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적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질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⑪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⑬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⑭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등록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등록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⑤ 양도일자 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⑥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⑦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기(⑦×⑧)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